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급여결정·통지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, 서산시, 부여군

내 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6조 및 보건복지부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,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, 급여종류·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,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2015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충청남도 아산시, 서산시, 부여군의 사회보장급여(기초생계) 신청 건에 대한 보장 결정일을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아산시 ○○○ 등 12명의 기초생계급여 신청 건에 대한 보장결정을 근

로능력평가 회신 지연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34일을 초과하여 결정 통지하였다.

[표] 기초생활보장 신청-통지 처리 현황

연번	시/군	신청인	생년월일	신청보장	접수일	민원처리 기한(30일)			민원처리 기한(60일)		
						처리기한	처리일	초과일	처리기한	처리일	초과일
1	아산시	○○○	795001	기초 생계급여	2017-04-07	2017-05-23	2017-06-02	10	-	-	-
2	아산시	○○○	980408	기초 생계급여	2016-10-19	-	-	-	2016-11-29	2016-12-12	13
3	아산시	○○○	815001	기초 생계급여	2017-04-04	2017-05-19	2017-05-31	12	-	-	-
4	아산시	○○○	805002	기초 생계급여	2017-04-04	2017-05-19	2017-06-02	14	-	-	-
5	아산시	○○○	420609	기초 생계급여	2016-06-20	2016-07-29	2016-08-04	6	-	-	-
6	아산시	○○○	610213	기초 생계급여	2015-08-10	2015-09-15	2015-10-06	21	-	-	-
7	아산시	○○○	620910	기초 생계급여	2015-09-07	-	-	-	2015-11-20	2015-12-24	34
8	아산시	○○○	620215	기초 생계급여	2015-10-27	-	-	-	2016-01-07	2016-01-08	1
9	아산시	○○○	491007	기초 생계급여	2016-10-25	2016-12-06	2016-12-08	2	-	-	-
10	아산시	○○○	530617	기초 생계급여	2015-08-04	2015-09-09	2015-10-13	34	-	-	-
11	서산시	○○○	440803	기초 생계급여	2015-07-16	2015-08-20	2015-09-17	28	-	-	-
12	부여군	○○○	680920	기초 생계급여	2016-01-05	2016-02-11	2016-02-12	1	-	-	-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, 서산시장, 부여군수는

[주의]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